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개정 대비표

- 시행일자: 2019년03월26일
- 등재위치:Home>고객센터>자료실>상품공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9조(수수료)	제9조(수수료)	
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	① (좌동)	
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		
있으며,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.	S TTEL ES SEBME 19 95M1	17'1월 기준
② 수수료는 은행 영업점이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	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	공정거래위원
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<u>수수료율을</u>	게시하고 <u>수수료(율)를 변경하는 경우에는</u>	회 표준약관에
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	제29조를 준용합니다.	따른 준용
1개월간 알린다.		
제 29조 (약관의 변경)	제 29조 (약관의 변경)	
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	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	
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	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	
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.	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	
② 은행이 제1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	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	
"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	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	
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	영업점에 게시 <u>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</u>	
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		
	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	
	<u>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</u>	
통지하여야합니다.	<u>한다.</u>	
③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		17'1월 기준
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	공정거래위원
	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	회 표준약관에
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	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따른 준용
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	<u>이경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중시하여야 한다.</u>	
	③ 은행이 제1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	조항번호 변경
	경우에는 "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	
	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	
	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	
	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	
	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	
	승인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	
	통지하여야합니다.	
	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	
	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	
	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	

	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(신설)	부칙(2019.03.26) 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